본
(호 담당 부)
가

이해 관계 진술서

1. 귀 사무소 200 본, 가 호 『유체동산 압류사건』
집
에 관하여 200 . . . 채무자 에서 본인소유
업소
유체동산을 압류 당하였는바
2. 본인은 위 사건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로서 압류당할 하등 이유가 없으므로
3. 위 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해관계인임을 진술함.

200 . . .

위 진술인 (제3자) 인

주 소

주민 등록 번호	
신 분 증 번호	
연락처전화번호	

ㅇ ㅇ 지방법원 집행관 귀하

확 인 서

위 이해관계인임을 확인함

200 . . .

채무자(또는) 인